

한국GKN 주식회사 일반구매약관

수행 과정 상 여하한 지적재산권이 창작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동 권리는 구매자의 소유가 된다.

제 1 조 정의 및 소개

“구매자”, “구매자를” 및 “구매자의”라는 표현은 한국 GKN 또는 그룹에 속하는 기타 회사를 통해 해당 구매자를 지칭한다.
 “그룹”이란 GKN plc 및 그 그룹사들을 의미한다.
 구매자와 귀사간의 계약(“본건 계약”)에는 (i) 귀사로부터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적용되는 적법하게 서명된 계약서; (ii) 구매자가 귀사에 발탁하고 귀사가 확인한 구매주문서 또는 인도일정주문서 (“주문서”); (iii) 본 일반구매약관; (iv) 구매자가 귀사와 합의한 사양서 및 안전, 보건 및 환경 요건; (v) 구매자가 귀사와 합의한 보증 구매 조건 및 (vi) 귀사가 (GKN의 공급자 포털 또는 기타를 통해) 이용가능한 구매자의 품질 및 기타 요건 또는 절차서가 포함된다. 본건 계약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위 목록에 기재된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 2 조 귀사의 조건 배제

귀사가 구매자의 구매에 대하여 추가적인 또는 상이한 조건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본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본 일반구매약관에 의해 배제되고 거부된다.

제 3 조 인도

- 3.1 귀사는 본건 계약에 명시된 인도 조건과 일자에 따라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인도하여야 한다. 여하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때에 인도되지 않거나 잘못된 인도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주문서를 해제할 수 있다.
- 3.2 본건 계약의 여하한 부분에서 인도 조건을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상품은 (현재 유효한 Incoterms에서 정의한)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귀사가 인도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인도 시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3.3 모든 상품은 인도 전, 후 및 과정 중에 적절한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고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각 인도 시마다 구매자가 수락할 수 있는 양식으로 된 품질인증서 및/또는 최신 재료안전성 데이터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제 4 조 품질, 수락 거부 및 면책

- 4.1 귀사가 공급하는 상품은 (i) 본건 계약에 명시된 수량 및 명세와 일치하여야 하고; (ii) 만족할 만한 품질 수준이어야 하며; (iii) 상품 자체의 통상적인 목적 및 구매자가 귀사에게 통지하거나 귀사가 합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특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iv) 설계, 재료 및 세공 상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v) 어떠한 권리 제한도 없어야 한다.
- 4.2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i) 해당 산업의 규칙에 부합하는 적합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직원에 의해 효율적이며 안전하고 능숙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ii) 동일한 환경에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련되고 경험있는 사업 운영자에게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이어야 한다.
- 4.3 귀사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및 여하한 부대 기술)는 (i) 교통, 건강, 안전 및 환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모든 법적 요건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하고; (ii) 여하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iii) 본건 계약에서 언급된 사양 또는 기타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iv) 구매자가 승인한 견본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 4.4 구매자는 귀사가 인도한 상품을 검수하고 시험할 수 있고 (의무 사항은 아님) 본건 계약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의 수락을 (귀사의 위험 및 비용 부담으로) 거부하고 반환할 수 있다. 귀사는 수락이 거부된 상품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락 거부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건 계약과 일치하는 상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4.5 귀사는 각 그룹사에게 (i) 귀사에 의한 본건 계약의 위반 및 (ii) 귀사 또는 귀사의 직원, 대리인 또는 본건 계약에 의거하여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도급계약자의 과실에 의한(negligent)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야기되거나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수준의 법률 비용 포함) 또는 기타 청구(구매자의 소비자 또는 그들의 고객이 시행한 제품회수조치(recall) 및 서비스 조치에 관련된 제3자 청구 및 비용 포함)를 상환한다.

제 5 조 청구 및 지급

- 5.1 구매자는 귀사가 본건 계약에 따라 인도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본건 계약에 명시된 가격(인도 비용 포함 및 판매세(sales tax) 비포함)를 지급한다. 귀사는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인도된 후에 본건 계약 상의 지급일정에 따라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5.2 청구서에는 인도일, 주문서 번호, 인도지 주소 및 인도 대상 상품 및/또는 서비스 명세가 기재되어야 하고, 청구서는 해당 주문서에 명시된 청구 주소지로 송부되어야 한다.
- 5.3 주문서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대금은 유효하게 발급된 청구서를 구매자가 수령한 달의 말일 이후에 도래하는 목요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 5.4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구매자는 주문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 대금에서 본건 계약 또는 귀사와 그룹간의 기타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 6 조 기밀준수 및 지적재산권

- 6.1 귀사는 여타 개인 또는 회사에게 그룹 또는 그룹의 여하한 사업부문, 고객, 공급자 또는 협력업체(collaboration partners)에 속하는 여하한 (본건 계약, 사양서, 공식, 제조공정서, 노하우 및 기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는) 기밀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구매자에 대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경우나 구매자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귀사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기 정보 및 그 복사본을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6.2 구매자의 요청 시 귀사는 귀사 또는 귀사의 직원, 하도급자 및 컨설턴트가 구매자를 위해 창작한 또는 작성한 여하한 서류, 사양서, 계획, 도면, 견본품, 정보 또는 상품을 무료로 어떠한 권리제한도 없이 구매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무료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6.3 구매자가 귀사에게 제공한 여하한 정보, 문서, 시제품(prototype) 또는 설비(tooling)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구매자나 구매자 고객 또는 공급자의 소유이며, 구매자에 대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 공급 목적으로도 이용되어야 한다. 전술한 정보, 문서, 시제품(prototype) 또는 설비(tooling)로부터 또는 본건 계약의

제 7 조 구매자의 재산

- 7.1 본 조는 (i) 주문서에 의거하여 구매자가 구매한 및/또는 귀사가 제조한; (ii) 수정, 수리 또는 교체 여부를 불문하고 상품 및/또는 서비스 공급을 위해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구매자가 귀사에게 제공한 모든 재산(모든 종류의 설비(tooling) 포함)과 기타 관련 정보, 문서 및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구매자 재산”)에 관한 조항이다.
- 7.2 구매자 재산 (및 그로부터 발생한 잔폐물(scrap))의 유일한 소유자는 구매자이며, 구매자는 항상 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구매자가 누가 구매자 재산의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정하는 대로 추정한다.
- 7.3 귀사가 구매자 재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경우 이는 구매자의 수탁자로서 위탁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며 귀사는 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아니한다. 귀사는 구매자가 반환을 요청할 때까지 귀사의 사업장에서 본건 계약을 수행할 목적으로만 구매자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가능하고 비독점적인 라이선스를 보유하며 구매자는 언제든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귀사는 구매자 재산의 사용을 재라이선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7.4 구매자 재산에 대한 위험은 인도 시에 귀사에게 이전되고 구매자에게 다시 반환될 때까지 귀사가 부담한다. 구매자 재산이 귀사의 점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동안 귀사는 (i) 구매자 재산에 대한 손실이나 파손(합리적인 수준의 마모를 제외)에 대하여 책임지며; (ii) 귀사의 사업장에서 적합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구매자 재산을 보관하며; (iii) 구매자 재산이 구매자의 소유라는 내용의 라벨을 부착하거나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iv) 구매자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고; (v) 주의를 기울여 이용하며; (vi) 구매자 재산을 검사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며; (vii) 분실, 손해 또는 압류 시 이를 즉각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viii) 구매자 재산에 대한 변경을 가하거나 조작하거나 여하한 물건에 구매자 재산을 부착하거나 구매자 재산이 다른 여하한 물건을 부착하지 아니하며; (ix) 점유하고 있는 구매자 재산을 내어주거나 여타 타인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x) 구매자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거나 또는 그에 대해 권리제한을 설정하지 아니하며; (xi) 구매자가 합리적인 내용의 통지를 하면 통상적인 업무 시간 내에 자유롭게 제한 없이 구매자 재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xii) 언제든지 구매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귀사의 사업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또한 (xiii) 어떠한 식으로든 구매자 재산을 복사하거나 복제하지 아니한다.
- 7.5 구매자는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문생산 설비(bespoke tooling)를 구매하고 본건 계약에 의거하여 현재 시가로 상품 생산을 하기 위해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취소불가능한 선택권을 보유한다.

제 8 조 해지

- 8.1 해당 국가의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구매자는 귀사가 주문서의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기 전에 언제든지 통지하여 여하한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8.2 구매자는 (i) 임의로 귀사에 서면 통지하며; (ii) 귀사 또는 귀사의 모회사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귀사의 채권자들과 이와 관련하여 회화를 했을 때 즉각; 또는 (iii) 귀사가 본건 계약을 위반하고 해당 위반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위반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위반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 본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8.3 주문서 또는 본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8.4 귀사는 본건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 최고 15년간 지속적으로 예비 부품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일반 조항

- 9.1 귀사와 귀사의 공급자는 뇌물방지 및 부패방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정 및 규약과 www.GKNAutomotive.com/SupplierCodeofConduct에 명시된 GKN 윤리강령 및 GKN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통지한 후 감사와 준법 여부 확인을 위해 귀사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9.2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귀사는 귀사가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구매자가 요청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9.3 귀사와 귀사의 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자는 구매자 재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현장 및 안전규칙을 준수하고, 귀사가 그에 대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 9.4 본건 계약에 의거한 구매자의 권리 또는 구제수단은 본건 계약에 의거하여서든 또는 기타에 근거하여서든 구매자가 행사할 수 있는 기타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9.5 귀사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건 계약에 의거한 귀사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그룹 내 각 회사는 본건 계약의 수혜자가 되며 본건 계약의 조건에 의거하여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 9.6 구매자가 본건 계약의 여하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지연한 경우 이는 구매자에 의한 권리의 포기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9.7 귀사 직원 중 여하한 사람이 법률상 구매자에게로 전직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귀사는 해당 해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구매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9.8 본건 계약에 대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 10 조 법률 및 관할권

귀사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었거나 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본건 계약 또는 그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이나 청구(“청구”)와 관련한 관할권은 본건 계약의 목적적 준거법으로 하고, 청구는 싱가포르 중재재판의 중재 규칙에 의거하여 동 규칙에 의거 선임된 1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해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중재에 회부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중재의 공식 언어는 영어로 한다.